

[일련번호 : 10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동은 「주민등록법」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3조(습득 주민등록증의 처리)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의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,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, 무단전출, 직원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,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파기하여야 하고, 제44조(주민등록증의 회수·파기 등)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[별지 제36호 서식]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「주민등록 사무편람」 (행정안전부)에 의하면 시·군·구로부터 이송되어온 습득 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분실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분실 재발급을 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회수(인계)대장에 등재하여 파기하

도록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0건에 대하여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며 법령상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수처리하지 않았고, 2024. 4월 이후 습득 주민등록증에 대한 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.

[표]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부적정 내역

연번	접수일자	성명	생년월일	수령여부	부적정 내역
1	230113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2	230105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3	221201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4	221004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5	220609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6	220517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7	220307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8	220222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9	220208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10	220208			미수령	회수 미실시
11	240418 ~241231	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미작성			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